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업무에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 추가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67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업무에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 추가	2

I. 개요

1.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67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7. 1.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 등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중대 폭력 피해, 부당해고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적 분쟁이기에, 사회복지사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1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업무에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업무 중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지원에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생략)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u>지원</u>	1. ----- ----- <u>지원(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포함한다)</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법 제3조의3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상담을 지원하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중앙 권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도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사회복지사협회 등을 통해 유사한 권익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조사²⁾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중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클라이언트 문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폭력 피해나 부당해고 등의 사건은 손해배상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권익지원센터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유조안 외, 「사회복지사 안전확보를 위한 폭력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연구」, 2021,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사의 폭력 경험 유무 >

(Base: 전체 응답자, n=4,210)

폭력 유형 구분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일어난 적 있음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일어난 적 있음		지난 1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일어났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체적 폭력	1,510	35.9	1,466	34.8	44	1.0
언어적 폭력	2,539	60.1	2,382	56.6	148	3.5
정서적 폭력	1,817	43.2	1,800	42.8	17	0.4
성적 폭력	969	23.0	960	22.8	9	0.2
경제적 폭력	1,110	26.4	1,065	25.3	45	1.1
의료적 위험	1,256	29.8	1,241	29.5	15	0.4
정보적 위험	1,354	32.2	1,310	31.1	44	1.0
폭력경험	2,987	70.7	2,670	63.4		

자료: 사회복지사 안전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 조사연구('2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클라이언트 폭력 발생 원인>

(Base: 전체 응답자, n=4,210, 단위: 명, %)

클라이언트 폭력 발생 원인	빈도	비율
클라이언트의 문제	1,611	38.3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불만	816	19.4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낮은 권위	609	14.5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해소에서의 어려움	276	6.6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클라이언트 욕구의 미충족	197	4.7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문제	191	4.5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의사소통상의 오해	166	3.9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 미흡	135	3.2
폭력에 대한 시설/기관의 인식 부족	118	2.8
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 경험 및 기술의 부족	47	1.1
서비스제공 과정상의 문제	44	1.0

자료: 사회복지사 안전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 조사연구('2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특히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사건 초기부터 상담·노무지원 등과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법률지원 제도와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법률지원의 예시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상담은 현재 권익지원센터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침해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현행 「법률구조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³⁾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역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므로, 권익지원센터를 통해 별도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구조제도와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성폭력,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특정 직역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3)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법률 상담을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로 명시하는 것은 권익보호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소송비용 지원은 기존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제도와와의 관계,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 부담 및 지원 대상·범위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지원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소송 등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함.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개정안에 동의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7